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직급여 제도 도입 〉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0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직급여 제도 도입	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6일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직급여 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에 대한 지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7조의11, 제77조의1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험료) ① (생략)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 ----- ----- ----- ----- -----. ----- ----- ----- -----

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 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③ (현행과 같음)

제5장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특례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휴직(휴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신 설>

대한 급여(이하 “자영업자육아
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
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
가 제1항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
체인력고용지원금”이라 한다)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육아
휴직급여와 제2항에 따른 대체
인력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
휴직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
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신 설>

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이하 “자
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이
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
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
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
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출산
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과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3(준용) ① 자영업자육
아휴직급여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보
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
여”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요건”
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지급요건”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장”은 “제5장의4”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각각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제11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1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장의4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받은 자
--	---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급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대상¹⁾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자영업자, 특히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위험이 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폐업 시 실업급여 지원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형태	의무가입	임의가입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 없는 사업주)
주급여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등	실업급여
가입목적	실업 · 육아 · 출산 등 종합 보장	폐업 후 생계보장 중심
보험료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자영업자 본인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 선택)

그런데, 최근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에 대한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일 · 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출산·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출산·육아는 개인 선택과 계획에 따라 수급요건이 정해진다는 점,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²⁾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할 경우 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람 중심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³⁾,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바 수급 이후 보험을 탈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 건전성 악화 및 보험료 인상 우려⁴⁾가 있음.

또한, 자영업자는 당사자가 사업주로서 보편적 휴가 또는 휴직개념이 적용되기 어렵고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휴직기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급여 정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별 소득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급여 산정이 임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될 위험이 있음⁵⁾.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휴직기간 확인 등 행정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말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3,705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9% 수준임.

3)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근로자) 중 40세 미만 비중은 93.4%인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중 40세 미만 비중은 12.8%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육아기가 도과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해질 경우 수급요건이 가능한 자영업자들의 가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현재 고용보험 기금은 최근 모성보호예산 급증에 따라 실업계정 적립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일반회계 이전·보험료 인상 등 재원 확보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5) 「고용보험법」상 모든 급여는 평균임금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매월 보수를 신고하므로 고용보험 DB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자영업자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부진이나 월별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다음으로, 대체인력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영업자가 인력을 채용하여 본인의 사업 경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자영업자가 일부 업무만 수행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에 대한 기존 지원금⁶⁾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제도 신설은 적용 불명확성, 기금여건, 역선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6)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